

2023년도 제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3. 4. 12.(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노정동(분과위원장), 김경숙, 김성주, 김원, 최진원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3-70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오진해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189건(안건번호 제2023-17421호~18196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3-17421호(순번 1번)는 온라인쇼핑몰에서 특정 제품 판매를 위해 타인의 사진을 이용한 사안으로, 해당 사진의 권리관계를 우리 심의위원회가 조사 판단할 수 없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의 제품 판매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가 저작권법에 의해 판단할 수 없으며 사진 부분의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행정조치로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제한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17422호(순번 2번)는 카페에서 음악저작물의 악보를 이메일을 통해 공중에 제공한 사안으로, 2차적저작물로서 단순한 불법복제물의 전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저작물과의 권리관계를 우리 심의위원회가 조사 판단할 수 없는 점,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복제·전송자를 상대로 민·형사 조치등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함.

안건번호 제2023-17423호~17425호(순번 3번~5번)는 블로그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제공 중인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중인 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

향을 고려하여 가결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183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3-70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됨.
- B, C, D,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오진해 전문위원: 제2호 안건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 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체 비공개하고 쪽수만 기재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음.

- 참석 위원 전원: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해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을 전부 공개함. 구글 검색결과제한 심의 회의 부분인 6쪽~10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비공개함.

3. 안전상정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노정동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람.
- 오진해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27개 온라인서비스의 이용자들이 게시한 1,189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실명의 민원

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고한 건으로, 주식회사 '■■■■ ■■■■■■'에서 제품 판매를 위해 제작한 이미지를 온라인 쇼핑몰 '☆☆☆☆☆☆☆☆'에서 무단으로 이용 중이라고 신고한 건임. 총 1개 게시물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 □□□□□□를 판매하는 내용의 게시물인데, 민원인 회사가 수입 및 판매하고 있는 ♥♥ ♥♥♥♥♥♥♥♥를 대리구매 방식으로 쇼핑 포털에서 판매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판매 상품의 상세페이지(이미지)를 복제하여 전송하고 있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이용 중인 사진의 저작물성에 의문이 있는 점, 해당 사진의 합법 시장의 존재 여부가 불명확하고 존재한다 하여도 시장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어려운 점, 심의대상 게시물의 제품 판매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가 저작권법에 의해 판단할 수 없으며 사진 부분의 저작권 침해로 이유로 행정조치로서 영업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권리 제한의 여지가 있는 점, 따라서 저작권·상표권 등 권리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자가 직접 법적 대응을 취하는 것이 보다 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본건은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결 의견임.
- A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이용 중인 사진의 권리관계를 우리 심

의위원회가 조사 판단할 수 없는 점, 심의대상 게시물의 제품 판매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우리 심의위원회가 저작권법에 의해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B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해당 사진의 저작물성을 단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 이용허락 등 권리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C, D, E 위원: 두 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은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카페에 게시된 음악저작물의 악보 총 1건임.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 및 채증자료를 보여주면서) 심의대상 게시물은 카페에서 이메일을 통해 피아노 연주곡 악보를 제공 중인 사안임. 각 곡은 작곡가를 기준으로 조사하였을 때 모두 저작권이 소멸하지 않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며, 게시자는 게시물의 댓글로 메일주소를 기재한 사람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악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오진해 전문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2차적저작물로서 단순한 불법 복제물의 전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원저작물의 시장 및 가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점, 행정조치의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권리자의 의사에 따라 직접 복제·전송자를 상대로 민·형사 조치등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부결 의견임.
- C 위원: 순번 2번 심의대상 게시물의 악보 저작물이 원저작권자로부터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은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저작권 침해를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B 위원: 심의대상 게시물은 특정 저작물의 전송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이용허락 등 저작권 침해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부결 의견임.
- A 위원: 순번 2번은 권리관계, 이용 허락 여부 등에 관해 불분명한 점이 있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은 본 시정권고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부결 의견임.
- D, E 위원: 세 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은 시정권고의 대상으로 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어 시정권고를 부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3번~5번은 실명 3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 및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물, 출판물 등을 각 제공 중이며, 총 4개 게시물임.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D 위원: 순번 3번~5번은 모두 합법 시장에서 유통 중인 저작물을 권한 없이 복제·전송하고 있는바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 의견임.
- A, B, C, E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3번~5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오진해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6번~776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1,183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음악, 방송, 영화, 만화, 게임, SW를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건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건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건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
- E 위원: 순번 6번~776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A, B, C, D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노정동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6번~776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3-17421호(순번 1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7422호(순번 2번)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3-17423호~17425호(순번 3번~5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 안전번호 제 2023-17426호~18196호(순번 6번~776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노정동 분과위원장이 제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3년 제78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3. 4. 19.

분과위원장 노정동

위원 김경숙

위원 김성주

위원 김 원

위원 최진원